

2023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10차 중능분화재분과 위원회 회의자료

- ▣ 회의일시 : 2023. 10. 17. (화요일), 14:00 ~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

1.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0조에 따라,
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
 -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(법인의 상근·비상근 임직원 포함)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-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
 -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.
 -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3. 아울러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4.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| | |
|---|---|
| 1 | 역사경관립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한시 설치 |
| 2 | 비공개(군사시설 관련) |
| 3 |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 |
| 4 |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들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(허가변경) |
| 5 | (사적)광명 영회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|
| 6 | (사적)고양 서오릉 및 서삼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|
| 7 | (사적)구리 동구릉 및 구리 명빈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|
| 8 | (사적)남양주 광릉 외 4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|
| 9 |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(허가변경) |

【검토사항】

【보고사항】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사직단 사직대문 보수정비 |
| 2 | 사직단 안향청권역 복원공사 |
| 3 | 창덕궁 돈화문 보수공사 |
| 4 | 경복궁 「광화문 월대복원 기념행사」 장소 사용 |
| 5 |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|

심 의 사 항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1

1. 역사경관립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한시 설치(창경궁, 선릉)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강남구 소재 사적 「창경궁」 과 「선릉」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임시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사적 창경궁 및 선릉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임시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국립산림과학원
- (2) 대상문화재명 : 창경궁(사적), 서울 선릉과 정릉(사적)
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/ 서울 강남구 선릉로100길 1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/ 서울 강남구 선릉로100길 1
 - 창경궁 및 서울 선릉과 정릉 문화재구역 내
 - 사업내용 : 창경궁 및 선릉 내 온실가스 관측 타워 한시적 설치(~27.12.31.까지)
 - 점유공간 : 50m²
 - 터파기 물량 : 3.2m³
 - 관측 타워 자체 재원 : 0.7m(가로)*0.7m(세로)*19.5m(높이)
- (4) 신청인 의견
 - 문화재청-산림청 업무협약(2023.3.15.) 이행을 위한 제안과제 수행
 - * 문화재청 제안(㉔공능 및 종묘, 조선왕릉의 기후변화 등 연구, 공능유적본부)
 - 역사경관립의 이산화탄소 흡수(대기-식생-토양) 평가
 - * 도심(용산)과 비교한 역사경관립의 온실가스 흡수를 실시간 표출 추진 (산림미세먼지 측정넷 플랫폼 활용: aican.nifos.go.kr)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궁능 2023-10-02

2. 비공개(군사시설 관련)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3

3.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.
 - '21년 사적분과 소위원회('21.4.28.),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1.11.16.), '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2.1.18.) /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영빈묘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-36 외 1필지 (문화재구역에서 157m 이격, 1구역)
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(2개동) 부지 조성
 - * 설명자료의 건축물 2개동은 부지 조성을 위한 예시자료이며 향후 단독주택 신축 시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 예정

구분	기존 ('21.4.28./부결)	기존 ('21.11.16./부결)	기존 ('22.1.18./부결)	금회 안	비고
대지면적	2,974㎡	1,374㎡	1,374㎡(건축부지) 1,729㎡(도로형질변경) 총 3,103㎡	1,124㎡(건축부지) 1,432㎡(도로형질변경) 총 2,556㎡	대지면적 감소
건축 (연)면적	544.80㎡ (961.60㎡)	247.56㎡ (384.84㎡)	273.60㎡ (273.60㎡)	149.5㎡ (149.5㎡)	*주택 향후 별도 심의
건축규모	지상2층, 8동	지상2층, 4동, 경사지붕(H:7m), 목구조	지상1층, 4동, 경사지붕(H:4.15m), 목구조	지상1층, 2동, 경사지붕(H:4.244m), 경량철골구조	*주택 향후 별도 심의
부지조성	콘크리트 포장 (1,638.5㎡) 보강토옹벽 L:385.7m (H:0.0~4.9m) 역L형옹벽 195.7m (H:0.0~4.5m) 법면조성(500㎡)	콘크리트 포장 (1,611.5㎡) 보강토옹벽 L:124.3m (H:0.0~3.0m) 역L형옹벽 175.1m (H:0.0~4.9m) 법면조성(131.6㎡)	콘크리트 포장 (1,611.5㎡) 보강토옹벽 L:124.3m (H:0.0~3.0m) 역L형옹벽 L:175.1m (H:0.0~4.9m) 법면조성(131.6㎡) 성/절토량 2,826㎡/1,116㎡	콘크리트 포장(1382.5㎡) 보강토옹벽 L:82.3m (H:0.0~1.0m) 역L형옹벽 L:131.4m (H:0.0~2.0m) 자연석쌓기 L:92m (H:0.0~2.0m) 법면조성(22㎡) 성/절토량 483.3㎡/722.3㎡	옹벽 규모 감소, 성/절토량 감소

(4) 신청인 의견

- 기존 부결안에 비해 규모 등을 줄여 재신청하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심의 부탁드립니다.

【 심의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04

4. 남양주 흥릉과 유릉 내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(허가 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흥릉과 유릉」 내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행위허가(변경)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기 허가된 남양주 흥릉과 유릉 내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의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
 -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(2020. 5. 14.) 심의 : 조건부가결(기존 시설부지 내에서 정비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남양주시장
- (2) 대상문화재명 : 남양주 흥릉과 유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352-1(금곡동 141-1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-6(문화재구역)
 - 사업내용 : 돌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(허가사항 변경)

구분	기존	변경(안)	비고
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면적: 190㎡ - 워터 조성 1식 - 워터 데크 1식 - 에어건 1개소 - 개수대 1개소 - 돌수로 1개소 - 파고라 2개소 - 전시벽 1개소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난간(H:1.2m×L18m) 신규 설치 - 배수로 신설 및 교체 (흡관 D800mm×L16m) - 물탱크(1m×0.8m, 지하수 저장용), 1개 설치 - 음수대(0.38m×0.38m×1m) 1개 설치 - 잔디(평떼) 포장 200㎡ - 기존 화강석경계석 7.6m →48.6m 확장 - 기존 자연석관석 및 흑콘크리트 포장 → 점토블럭 포장(200×200×T60mm) 30㎡ 변경 - 기존 용머리개수대 1개소 이설 - 기존 파고라 → 벽체형파고라 변경 - 기존 자연석관석 포장(6㎡→26.1㎡) 확장 	

(4) 신청인 의견 : 해당없음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5

5. 광명 영회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적 「광명 영회원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광명 영회원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경기도 광명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광명 영회원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- 조정사항

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-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1호, 2010. 12. 22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보존구역		
2구역	○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		

○ 조 정 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,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·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. ○ 제1구역에서 「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」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 허가 신청 건은 광명시와 협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	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.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6

**6. 고양 서오릉 및 고양 서삼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
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**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고양 서오릉, 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고양 서오릉, 고양 서삼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경기도 고양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고양 서오릉(사적), 고양 서삼릉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- 조정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○ 고양 서오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45호, 2017. 12. 4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	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	
5구역	○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한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^2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고양 서오릉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이하	○ 최고높이 7.5m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8m이하	○ 최고높이 12m이하	
4구역	○ 최고높이 11m이하	○ 최고높이 15m이하	
5구역	○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 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 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 ○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^2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.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교사목·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m^2 이상의 식재는 개별검토함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고양 서삼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45호, 2017. 12. 4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	
4구역	○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5구역	○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(문화재자료 제79호)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. ○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 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^2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고양 서삼릉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이하	○ 최고높이 7.5m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8m이하	○ 최고높이 12m이하	
4구역	○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5구역	○ 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(문화재자료 제79호)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 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 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 ○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^2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.(단,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·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m^2 이상의 식재는 개별검토함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.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7

7. 구리 동구릉 및 구리 명빈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「구리 동구릉, 구리 명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구리 동구릉, 구리 명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구리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구리 동구릉(사적), 구리 명빈묘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- 보물 3개소 포함 통합 고시(구리 동구릉)
(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/ 송릉 정자각 / 목릉 정자각)
 - 조정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'허용기준 공통사항'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
○ 구리 동구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68호, 2017. 5. 8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	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	
5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		
6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45m 이하		
7구역	○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단, 건축물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신축은 별도 심의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구리 동구릉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	
4구역	○ 최고높이 14m 이하	○ 최고높이 18m 이하	
5구역	○ 최고높이 29m 이하		
6구역	○ 최고높이 45m 이하		
7구역	○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,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은 별도 검토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m²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구리 명빈묘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68호, 2017. 5. 8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	
3구역	○ 서울시,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구리 명빈묘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3구역	○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. ○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.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.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8

**8 남양주 광릉 외 4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
허용기준 조정**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「남양주 광릉, 남양주 홍릉과 유릉, 남양주 사릉, 남양주 순강원, 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남양주 광릉, 남양주 홍릉과 유릉, 남양주 사릉, 남양주 순강원, 남양주 영빈묘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남양주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남양주 광릉(사적), 남양주 휘경원(사적), 남양주 홍릉과 유릉(사적), 남양주 사릉(사적), 남양주 광해군묘(사적), 남양주 성묘(사적), 남양주 안빈묘(사적), 남양주 순강원(사적), 남양주 영빈묘(사적)
- 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
 - 조정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‘허용기준 공통사항’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 - 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
 - * 소음·진동 유발 및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열 방출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표기 추가

○ 남양주 광릉, 남양주 휘경원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)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	
5구역	○ 남양주시,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광릉, 남양주 휘경원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 (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)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	
5구역	○ 남양주시,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흥릉과 유릉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45호, 2017.12.4.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신축불가	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	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		
5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(단, 건축물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심의)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(보호)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흥릉과 유릉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신축불가		
3구역	○ 최고높이 17m 이하		
4구역	○ 최고높이 23m 이하		
5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(단,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 검토)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사릉, 남양주 광해군묘, 남양주 성묘, 남양주 안빈묘 현행
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	
5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사릉, 남양주 광해군묘, 남양주 성묘, 남양주 안빈묘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	
5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(단, 최고높이 32m 초과 시 개별 검토)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순강원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순강원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영빈묘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7-11호, 2017.1.19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심의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·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○ 남양주 영빈묘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4구역	○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 ○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)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, 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(4) 신청인 의견 :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서 별도 붙임.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09

9.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(허가변경)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「고양 서오릉」(사적)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고양 서오릉 주변에 야영장 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- '20년 사적분과 9차 소위원회('20.11.25.) 부결 :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- '21년 공능분과 4차 위원회('21.08.17.) 부결 :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- '22년 공능분과 2차 위원회('22.03.15.) 조건부가결
: 식재 및 보행자 동선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(22.5.16. 소현수 위원 검토 완료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고양 서오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-92
- (3) 신청내용<야영장 시설 신축>
 -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-458(문화재구역에서 140m 이격)
 - 허용기준 1구역(개별심의)
 - 사업내용 : 건물 1동 신축, 야영장 시설 신축(허가변경)

구분	1차('20.11.25./부결)	2차('21.08.17./부결)	3차('22.03.15./조건부가결)	금회(안)	비고
대지면적	2,670㎡	좌동	좌동	좌동	
건축(연)면적	145.73㎡ (177.08㎡)	154.86㎡ (154.86㎡)	98.4㎡ (98.4㎡)	107.91㎡ (172.31㎡)	+9.51㎡ +73.91㎡
건물높이	8.5m(평지붕)	5.0m(경사지붕)	5.5m(경사지붕)	8.0m(경사지붕)	+2.5m
건축규모	지상2층, 1동, 철골조	지상1층, 1동, 철골조	지상1층, 1동, 철골조	지상2층, 1동, 철골조	+지상1층
부지구성	최대 절토높이 약5m	최대 절토높이 약3.5m 콘크리트포장 (T=200mm) : 546㎡	최대 절토: 약3.2m 콘크리트포장 (T=200mm):546㎡ 콘크리트옹벽 (H=0.2~3m):68.3m	최대절토:약3.2m 콘크리트포장 (T=200mm):268㎡ 콘크리트옹벽 0m	포장 - 278㎡, 옹벽 -68.3m
야영장 부지	부지면적: 798.92㎡	부지면적:좌동 데크(5×3m) 11개소 설치 수목 82주 별채	부지면적:1,340㎡ 수목 식재: 188본 ※ 조건부 검토 후 수목식재 1,298주로 변경됨	부지면적:좌동 수목식재: 588주	-710주

(4) 신청인 의견

- 문화재 경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절·성토를 최소화하여 현 지반을 이용하여 조성할 계획임

보고사항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0

1. 사직단 대문 보수정비

가. 보고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보물 「사직단 대문」의 보수정비 계획을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사직단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물 「사직단 대문」을 고증자료에 따라 보수코자 합니다.

※ 사직단 복원정비 사업 개요

사업 연도	단기	중기(1차)	중기(2차)	중기(3차)
	2015~2018	2018~2021	2022~2025	2026~2027
사업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계 및 외곽담장정비 · 부대시설 정비 · 관리사무소 건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지형 복원 · 전사청권역 복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안향청권역 복원 · 사직대문 보수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실보수 · 단유, 어도 정비 · 안내판 및 편의시설 정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직단 대문(보물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 - 문화재 현황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조성을 위해 1962년(14m)과 1973년(10m) 두 차례에 걸쳐 위치가 이동됨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 - 사업내용

구분	현황	보수(변경) 내용
판문모양	· 널문 형태	· 판문에 X자 가새 설치 · 종묘의 남신문, 외대문 형태를 참고한 홍살, 풍혈 등 설치
용마루	· 용마루(착·부고) 7단 · 상부 용두(2EA)	· 용마루(착·부고) 5단으로 변경 · 상부 용두(2EA) 양 끝으로 위치 이동
내림마루	· 내림마루(당골) 5단	· 내림마루(당골) 3단으로 변경 · 내림마루 상부 용두 신설(2EA)

(4) 신청인 의견

- 기존 사직단 대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조성을 위해 1962년 14m, 1973년 10m 두 차례 위치가 이동되며 그 형태가 크게 바뀌었음
- 이에, 사직단 대문에 대한 사직단국왕친향도병(1984~36) 및 유리건판 사진(1910년대)를 토대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‘사직단 복원정비 계획(2014)’에 따른 보수복원을 하고자 함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1

2. 사직단 안향청권역 복원사업

가. 보고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「사직단」의 안향청 권역 복원계획을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일제강점기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‘사적 사직단’의 제례동선 회복 등을 위하여 ‘사직단 복원정비 계획(2014)’에 따라 안향청권역을 복원하고자 합니다.

※ 사직단 복원정비 사업 개요

사업 연도	단기	중기(1차)	중기(2차)	중기(3차)
	2015~2018	2018~2021	2022~2025	2026~2027
사업 내용	· 화계 및 외곽담장정비 · 부대시설 정비 · 관리사무소 건립	· 원지형 복원 · 전사청권역 복원	· 안향청권역 복원 · 사직대문 보수정비	· 신실보수 · 단유, 어도 정비 · 안내판 및 편의시설 정비

※ 사업실적 및 계획(사직단 안향청권역 복원사업)

사업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
주요내용	지형복원, 발굴조사	복원설계, 발굴조사	복원공사(1차)	복원공사(2차)	복원공사(3차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직단(사적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 - 문화재 현황
 - 안향청: 1988년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어 존치됨
 - 그 외 건물 훼손되어 어린이수영장, 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이 건립되었으며 최근 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임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-38번지
 - 사업내용: 안향청권역 건조물복원 및 지형정비

건물명	구분	사업내용
안향청	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체(초석 포함) 해체 및 재설치 · 건물규모(정면4칸, 측면2칸) 변동없음 · 변형된 평면구조 복원정비(온돌방, 굴뚝설치 및 창호변경 등) · 노후된 부재 교체보수(기둥교체 등 8개소)
동집사청	일부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로(인도)와 간섭이 있어 기단까지 복원
서집사청	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규모: 정면 4칸, 측면 1칸(온돌방-온돌방-대청-온돌방) · 구조: 동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
중문채	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규모: 정면 10칸, 측면 1칸(좌측4칸-중문1칸-우측5칸) · 구조: 남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
약기고	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규모: 정면 4칸, 측면 1칸 · 구조: 동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
차장고	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규모: 정면 3칸, 측면 2칸 · 구조: 남향, 3량, 맞배지붕 / 벽체: 토벽 / 단청: 가칠

(4) 신청인 의견

- 조선왕실의 가장 큰 국가의례 시설인 사직단은 1920년대 시작된 공원화 계획에 의해 크게 변형된 채로 존치되어왔음.
- 사직공원 및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오며 대부분의 본래 시설이 훼손된 안향청권역은 사직대제 동선 회복을 위해 중요한 공간임
- 이에, ‘사직단 복원정비 계획(2014)’ 및 ‘사직단 안향청권역 발굴조사(2022~2023) 결과’를 토대로 안향청권역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,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자문을 실시하고자 함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2

3. 창덕궁 돈화문 보수 공사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보물 「창덕궁 돈화문」의 보수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보물 창덕궁 돈화문 노후에 따른 구조적 문제 발생에 따라 관람객 안전 확보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함
- 추진경과
 - ('14년) 문화재 특별점검 :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, 정밀안전진단 필요
 - ('15년) 정밀구조안전진단 : E등급(보수정비)
 - ('15년~'17년) 창덕궁 돈화문 모니터링 실시(現국립문화재연구원)
 - ('17년~'18년) 창덕궁 돈화문 보수 설계(용역비: 224,534천원)
 -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: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보수시점 결정(조건부가결)
 - ('18년~'22년) 국립문화재연구원 중점 관리 문화재 모니터링 실시
 -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상층 지붕부 해체수리 등 조속 조치 필요

연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등급	C (주의관찰)	C (주의관찰)	E (수리)	E (수리)	E (수리)

* 등급기준 : A 양호 / B 경미보수 / C 주의관찰 / D 정밀진단 / E 수리 / F 즉시조치

- ('23년) '22년 결과 바탕으로 보완설계, 보수공사 범위 확정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
- (2) 대상문화재명 : 창덕궁 돈화문(보물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99(와룡동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99(와룡동)
 - 사업내용 : 하층 연목이상 해체보수, 상층 도리이상 해체보수 공사

(4) 신청인 의견

- '17년 돈화문 보수공사 설계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해체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고증사진 등의 과학적 분석과 추가 자료 조사 및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돈화문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함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3-10-13

4. 경복궁 「광화문 월대복원 기념행사」 장소 사용

가. 제안사항

“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”를 추진하고자 경복궁 광화문 앞 월대 장소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경복궁 월대 복원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복원정비과
- (2) 대상문화재명 : 경복궁(사적) 광화문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
 - * 광화문 앞 월대복원공사 2023년 11월 완료 예정
- (3) 신청내용
 - 장소 :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 및 경복궁(광화문~근정전)
 - 사업명 :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
 - 행사일시: 2023.10.15.(일) 17:00~20:00
 - * 설치: 2023.10.13.(금) 09:00 ~ 22:00 (리허설 : 2023.10.14.(토))
 - * 철거: 2023.10.15.(일) 22:00 ~ 24:00
 - * 행사 무대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
 - 운영 프로그램

구분	시 간	내 용	비 고
10. 15.(일) <기념식>	09:00~14:00	리허설	
	14:00~17:30	공연 준비	
	17:00~18:00	식전 공연	
	18:00~20:00	기념식 및 야간관람	
	22:00~24:00	정리	조명 및 음향기구 철거

- (4) 신청인 의견 : 없음

【 보고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3-10-14

5.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가. 보고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구리 동구릉」 주변 지하수 굴착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내용

문 화 재	소재지	신청인	사 업 내 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(사적) 구리 동구릉	경기도 구리시	○ ○ ○	<생활용수 사용 위한 지하수 굴착> ○ 위치 :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-104 (5구역/ 문화재 구역과 190m 이격) ○ 사업내용 : 지하수 굴착 - 굴착규모 : 깊이 150m, 관경 150mm - 보호공 설치 규모 : 1*1*1m	허가	'23.09.27.
(사적) 파주 삼릉	경기도 파주시	○ ○ ○	<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조성> ○ 위치 :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7-16 외3필지 (3구역/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름) ○ 사업내용 :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조성 - 대지면적 : 3,065㎡ - 건축면적 : 499.6㎡ - 건물규모 : 3동, 지상1층 - 최고높이 : 5.5m - 용벽 : H=0.2~3.9m, L=929.66m ※ 2021.2.22.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	허가	'23.10.10.
(사적) 고양 서삼릉	경기도 고양시	○ ○ ○	<수소충전소 부지조성> ○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82 외2필지 (4구역/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름) ○ 사업내용 : 수소충전소 부지조성 - 대지면적 : 2,330㎡ 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: 261㎡) - 설치설비 : 57㎡(냉각기 설치)	허가	'23.10.10.